

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

김숙현 연구위원

2015. 3

YDI Policy Report



〈 요약 〉

□ 다문화정책 출발과 전개

-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화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시작
- 1990년대 초반 김영삼정부 정책의 특징은 차별적 포섭·배제주의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입을 제한하고 정착을 방지하는 정책
 - 1998년 8월 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변환, 국제결혼의 대중화 발판 마련
 - 차별적 포섭·배제주의 성향모델의 특징
- 노무현정부 이후 2005년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 실시
 - 김영삼, 김대중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이 외국인노동자 중심이었으나, 노무현정부 이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으로 변환
 - 사회통합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 실시
- 이명박정부 시기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국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국적취득의 체제를 수정 및 보완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를 실시
 - 사회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 실시
 - 동화주의 정책 모델의 특징

□ 다문화정책 성과

-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업무효율 향상
- 정책의 양적 및 질적 향상
- 차별주의에서 동화주의로 정책 변환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서비스 확대

□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

- 중국,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형성 (전체 비율의 80%)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비율이 높음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고, 영남지역도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높음
- 2007년 이후 다문화 가족의 자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1만명 이상이 16세 이상의 자녀
 - 대학입시, 군복무 관련 정책고려 대상의 증가
- 국제결혼율의 둔화, 이혼 및 사별율의 증가

□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추진 특징

- 예산이 많이 배분된 순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순
- 주제별 각 부처의 과제 중복

□ 다문화지원책의 문제점

- 부처별 다수의 중복정책
- 한국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맞는 한국형다문화정책 부재
 -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가정폭력 및 부당한 가정 내 처우에 대한 지원 부족
-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배타·차별적 인식
- 이혼 및 사별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증가
- 한국 정착(주)자들에 대한 경제활동 영역의 협소 및 지원 부족

□ 다문화지원책의 개선방안 및 제언

- 결혼이주자에서 한국정착(주)자로의 정책대상의 전환 필요
- 다문화가족의 자녀정책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는 새로운 계층형성 가능성 증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취업, 군복무 등 제반 정책 마련
- 다문화정책의 일원화
 - 산발적·중복적인 정책 시행을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
- 이주자의 노동력 및 경제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 에스닉 마을, 영어 및 원어민 촌 개발,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 결혼이주자 출신국가의 물품에 대한 면세지원 마련
 - 종교 및 문화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식재료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조치

- 이혼 및 사별로 인한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 검토
 - 기초생활비 지급, 자녀의 교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발판 지원 등 복지혜택의 확대
 -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흡수하여 관리, 共生하는 정책 개발 필요

〈 차 례 〉

I. 다문화 정책 변동과정	1
1. 다문화정책의 출발과 전개	3
2. 각 정부별 다문화정책 전개와 성과	9
II.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시행현황	17
1.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현황	19
2. 2014년도 중앙 행정기관별 다문화정책 시행현황	26
III. 다문화가족지원책의 개선방안	39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41
2. 다문화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제언	43
참고자료	47
참고문헌	66

I. 다문화 정책 변동과정

1. 다문화정책의 출발과 전개

1) 다문화정책 개념과 유형

□ 다문화정책의 개념

○ 다문화주의 정의

- 다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이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개념
- 다문화주의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
 - ※ 이데올로기적 가치, 국민통합적 수단, 다원주의적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범주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한 국가나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정체성에 관해 타인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
- 건강한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다문화주의의 인정과 확립이 필요

○ 다문화주의 개념의 시작

-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후반 문화다원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리되기 시작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전반의 다원적 견해 및 소수의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

○ 다문화주의의 특징

-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나 집단을 고립 또는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함
- 소수집단을 위한 공적인 인정과 정책적 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주의 정책에 참여하려는 집단도 증가하면서 소수집단 내 갈등도 야기

- 다수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수집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다문화정책이란?

- 다문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 주류 또는 다수집단과 다른 비주류 또는 소수자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보장을 지칭
- 특정 인종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사회·정치·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개입

<표 1> 다문화주의의 정의

	학자	정의
이데올로기적 가치	Taylor, 1992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
	Soysal, 1994	보편적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비국적자 및 체류 자격 미비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 시민권을 '탈민족국가'적인 방식으로 재규정(post-national citizenship) 하려는 시도
	Kelly, 2002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정치이념의 경계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the latest lsm)'
	김남국, 2005	공공영역에의 문화적 인정 및 생존 요구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역차별적인 방법을 통해 정체성의 정치를 지지하는 것
국민 통합적 수단	Saha, L.J. 1984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 사회가 '다문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해야할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
	Kymlicka, 1995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politics of difference)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학자	정의
	정상준, 1995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 운동이라기보다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
	Troper, 1999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으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김남국, 2005	상호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의 실현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
	원숙연, 2008	포스트모더니즘적 탈-중심화 및 차이에 대한 인정을 본질적 요소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윤인진, 2008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다원주의적 규범	Vertovec, S. 1996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샬러드 그릇(salad bowl)'
	강휘원, 2006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 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것
	(사)국경 없는 마을, 2006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

출처: 김남국 (2008).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의 전개와 수용: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연구원, 2007), 경제와 사회 제80호. p.343~361 참조

□ 다문화정책의 3 모델

○ 동화주의 모델 (assimilationist model)

-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목적
-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게 주류사회의 핵심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조

○ 차별적 포섭·배제주의 모델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 소수인종집단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유형
 - ※ 국가에 부족한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 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수용하지 않고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수용 또는 분리
- 국가 및 사회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유지

○ 다문화주의 모델 (multicultural model)

- 주류문화뿐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정책목표
- 문화집단 간 평등과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외국인이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
- 정책목표는 同化가 아닌 共存과 共生으로 설정

○ 다문화정책 모델의 특징 비교

<표 2> 다문화정책 모델의 특징비교

구분	동화주의 모델	차별적 포섭·배제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경향성	자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 내국인과 평등하게 처우하려함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
정책목표	소수자의 주류사회동화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의 역할	제한적 지원	적극적 규제	적극적 지원
이주민에 대한 관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이방인, 위협적 존재	상호존중과 관용
법적 수단	비차별의 제도화	단속 및 추방	제반권리의 허용
국적부여 원칙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허용
사례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비판	이주민 동화 곤란 및 현실적 사회 배제	현대사회에 부적합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 가능

출처: 김행열 (2013).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68호.

○ 기존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독일, 일본과 같은 차별배제주의 모델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

2) 한국 다문화정책의 역사적·지리적 검토 및 도입

□ 한국의 전통사회에 대한 불변의 인식구조

-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동일한 언어·문화, 단일민족이라는 명분아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발전, 성장
- 서구의 민족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동반 창출된 역사적 구성물 정도의 인식
 -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유서 깊은 불변적 요소라는 믿음이 존재
 - 유교사상, 쇄국정책과 결부하여 더욱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 요인을 내부적으로 성장시켜 왔음
-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조금씩 인식의 변화 시작
 - 한국 내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사고가 개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가위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

□ 지리적 특성

-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되어 왔었음
 - 특히, 신라나 고려시대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아라비아 등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시장을 형성하고 교류하며 균락을 이루었다는 문헌도 존재
-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외부세력에 의한 수많은 침략
 - 이것도 외부세력 및 문화에 대한 반감요인으로 작용

2. 각 정부별 다문화정책 전개와 성과

1) 정부별 정책 전개과정

□ 김영삼정부 전후

- 1980년대 말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동포들의 입국확대
- 글로벌 시대적 담론을 바탕으로 탈정부규제, 급속한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 1997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법률상 가족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
-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노동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규제
- 다문화정책 모델로 차별적 포섭·배제정책의 특징을 보임

□ 김대중정부

- 금융위기로 인해 당시 7%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처하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표방
- 2002년 말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80%가까이 되면서 신규 산업연수생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취업연수 제도를 도입
-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최소화하고 이들의 정착을 방지하겠다는 정책으로 폐쇄적 정책의 특징을 보임
- 1999년 9월 재외동포법과 2002년 12월 취업관리제를 도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
- 1998년 8월 결혼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이후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설 중개업체들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이 대중화되는 촉진제 역할을 수행

- 국제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다문화 가족 형태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다문화정책의 첫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

□ 노무현정부

- 다문화의 아젠다의 본격화는 노무현정부에서 시작
- 2003년 5월 6일 대통령훈령 제109호에 따라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이 '사회통합기획단'으로 개편되면서 빈부격차·차별시정 TF가 구성 및 운영(2004년 7월 1일 업무개시 - 2008년 2월 폐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대책을 기본으로 중앙정부차원의 다문화정책이 시작
- 노무현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빈부격차·차별시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다문화사회의 담론은 2000년대부터 정부 및 학계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화
 - KBS의 국제결혼이민자들의 삶과 애환을 다룬 교양프로그램인 '러브 인 아시아'도 2005년 11월부터 방송되기 시작
- 과거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의 이민자정책이 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면 노무현정부의 이민자정책은 주요대상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으로 전환
- 노무현정부 이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주정책을 탈피하여 외국인과의 상호이해와 존중에 바탕을 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주에서 이민'으로 라는 견해 표명
 - 다문화정책의 동화주의 노선을 표방

- 2005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이 외국인의 인권과 다문화정책을 언급
 - 2006년 6월 다문화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지적
- 2006년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의결
- 2006년 12월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4월 국회통과, 7월 4일부터 시행 시작
-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2005년 전체결혼의 14%, 농촌지역 결혼의 34%가 국제결혼의 비중을 차지
- 2005년 7월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2007년 1월 고용허가제 실시
- 2006년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 두어,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 및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마련
- 2007년 3월 방문취업제도의 도입
 - 중국 및 러시아지역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07년 12월 여성가족부 가족통합팀 신설로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 가족업무 전담부서 설치
 -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재외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입법되어 2007년 7월 18일 시행

□ 이명박정부

- 국정목표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을 제시
- 이명박정부 다문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사회서비스 확대 및 사회정책에 초점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사회적응, 교육, 출입국 제도개선, 운전면허 교실 운영 등을 위한 복지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 실시
- 국내거주 외국인의 유형별 차별적 정책을 실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정에게는 우리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교육지원과 사회 서비스 확충 등에 치중
- 다문화와 관련된 주관부처로 여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국토부 등 다수의 기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분산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 확충 전개¹⁾
- 2008년 3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수립
 - 보건복지가족부에 다문화가족과를 신설하여 다문화정책을 전담
 -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최초의 법안인 다문화가족지원법²⁾을 제정
 - 국적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국적취득 관련 사항을 수정 및 보완

1) 출입국 관리 및 인권 관련 정책은 법무부, 생활보장 및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같다. 그러나 문화적 차원에서는 정책대상이 복합적이고 사업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중복적이며 보이는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형수,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제26권 제2호, 2011. pp.143-146 참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세한 법률내용은 연구 보고서 뒤의 참고자료 참조.

- 2008년 5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
 -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책과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서비스 구축

-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2008-2012)'를 확정·발표
 - 외국인 정책의 기본 3방향 제시 (①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②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의로의 발전, ③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

- 2010년 5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 법무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

-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

- 여성부는 2009년 6월 10일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출범
 -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활동 전개

- 이명박정부의 다문화정책의 특성
 - 노무현정부의 다문화 정책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급속한 다문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

 - 각종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언어 및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춘 동화주의 정책모델 유형의 특징

2) 성과

□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정책

-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업무효율향상
- 입국절차 및 비자연장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우호적 정책으로 전환
- 외국인 노동자 및 근로자의 수의 확산, 부족한 노동력 대체

□ 정책의 양적 및 질적 향상

- 김영삼정부 이후 다문화정책이 추진되어 노무현정부 시기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
-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에 다문화정책을 각 정부별로 확대 추진하여 양적 서비스 확대
- 2005년 이후 총체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질적 및 양적 향상이 이루어 짐

□ 차별주의에서 동화주의로의 정책변환

- 다문화정책의 기본 정책의 틀이 ‘차별주의’에서 ‘동화주의’로 변환
- 세계화 및 글로벌 국가기준에 맞춘 다문화정책 추진

□ 결혼이민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통한 경제활동 영역확대 및 처우개선

-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정착에 도움

Ⅱ.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 시행현황

1.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현황

1) 다문화가정의 유형별, 국적별 성별현황

□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범주 및 유형

-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혼혈인 가족 등을 통틀어 ‘다문화가정(가족)’으로 명명 3)
-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가능
- 근래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 이주민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유형
 - 다문화가정의 범주로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포함
 - 다문화가정의 유형은 <표 3>과 같음

<표 3> 다문화가정의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 -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의 변천과정과 통계분석

- 국제결혼가정은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결과로 대규모 증가
 -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적 신념으로 대규모 집단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요인도 작용
 - 개인의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동남아시아 계통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의 증가도 주요변수로 작용
- 다문화가족은 2013년 기분 75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을 예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예상)

<표 4>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22,878	188,580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음
 -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는 2007년에 비해 2013년 거의 두배 가까이 수가 증가

- 특히,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의 수가 2007년 15,060명에서 2013년 49,775명으로 증가하며 거의 4배 가까이 증가

※ 결혼이민자 외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및 결혼이외의 이유로 귀화한 자의 수가 증가한 것을 뜻함

<표 5>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중국(한국계)	59,902	70,901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중국	33,577	39,434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베트남	16,305	21,306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필리핀	7,146	8,033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일본	6,742	6,653	5,742	5,594	11,070	11,705	12,338
캄보디아	-	-	-	3,354	4,422	5,316	5,684
몽골	1,605	2,121	2,591	2,665	2,959	3,068	3,186
태국	1,566	1,896	2,291	2,350	2,914	2,918	2,975
미국	1,436	1,750	1,911	1,890	2,598	2,747	3,081
러시아	997	1,854	1,162	1,279	1,827	1,943	2,025
대만	5,696	4,336	1,211	1,856	1,836	2,390	2,661
기타	7,043	9,940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 국적별 결혼이민자로는 중국(한국계)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로 조선족이 언어소통이 가능하기 때문
 - 2007년에 59,902명에서 2013년 100,5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 조선족 다음으로는 중국인들이 많았음
-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국적이 가장 많음
- 캄보디아의 경우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기 시작
- 중국(한국계), 중국,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총 결혼이민자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세종	-	-	-	-	-	-	653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음.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상남도의 결혼이민자도 부산을 합하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거주

<표 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 '09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 2007년 이후 다문화가족의 자녀수가 증가하기 시작
 -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 2007년 44,258명에서 2013년에 191,3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2013년도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11,081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인이 되는 비율도 크게 증가
 - 대학진학, 취업, 병역의 의무 등 많은 정책의 고려대상으로 부각

<표 8>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세종	-	-	-	-	-	-	563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 전국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수는 2013년 현재 19만 명을 초과

-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의 자녀수가 많은 것이 특징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와 비례

<표 9>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안전행정부)

(단위 : 명)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39,278	42,294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33,231	37,084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256	41,238	49,458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15,820	18,020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16,237	17,806
캄보디아				2,554	3,565	4,690	5,961
몽골	405	816	1,681	1,807	2,250	2,468	2,802
태국	799	870	1,563	1,711	2,082	2,427	2,663
미국	852	2,406	683	821	1,207	1,422	1,697
러시아	263	303	736	766	1,090	1,139	1,289
대만	878	1,515	770	1,129	1,191	1,615	1,758
기타	2,053	3,447	7,639	6,766	9,028	9,018	10,496

* 캄보디아의 경우 '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수는 중국(한국계)가 많았으나, 자녀의 수는 베트남이 많음(2013년)

○ 중국(한국계)보다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0>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혼인건수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외국인과의 혼인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총 혼인 중 비중)	(10.9)	(11.0)	(10.8)	(10.5)	(9.0)	(8.7)
■ 한국남성+외국여성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20,638
■ 한국여성+외국남성	8,980	8,041	8,158	7,961	7,497	7,688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는 2007년에 비해 저하
 - 총 혼인건수는 2007년에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조건 강화와 적채되어 있던 미혼자들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

<표 11>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혼인·이혼통계, 통계청)

(단위 :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이혼건수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의 이혼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 중 비중)	(6.7)	(9.4)	(9.3)	(9.5)	(10.1)	(9.5)
■ 한국남성+외국여성	5,609	7,901	8,246	7,852	8,349	7,878
■ 한국여성+외국남성	2,685	3,079	3,227	3,236	3,146	3,009

- 2007년 이후 외국인과의 혼인추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의 이혼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2. 2014년도 중앙 행정기관별 다문화정책 시행현황

1) 총소요예산

□ 2013년도 986억원에서 2014년도 1,078억원으로 92억원 증가

- 교육부의 다문화가족 대상 근로장학금 지원(65억원 증, 92.9% 증가),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 (20억원 증, 3.5% 증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4.3% 증, 8.4% 증가)
-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지원 (3억원 감, 30% 감소), 문체부의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지원 (2.5억원 감, 62.5% 감소)는 각각 삭감

<표 12> 2014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예산

(‘14년 부처 예산 순, 백만원, %)

부처	회계/ 기금	사업명	‘13년 예산	‘14년 예산		
				예산	증감	%
총 계			98,632	107,824	9,192	9.3
여가부	소 계		69,852	72,702	2,850	4.1
	여성발전 기금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4,481	4,481	-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344	344	순증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58,370	60,387	2,017	3.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	5,251	5,690	439	8.4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1,400	1,400	-	-
	청소년 기금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지원 프로그램	350	400	50	14.3
교육부	소 계		15,540	21,500	5,960	38.4
	복권기금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 사업	540	-	△540	순감
	일반회계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7,000	13,500	6,500	92.9
	지방비 특별교부금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8,000	8,000	-	-

부처	회계/ 기금	사업명	'13년 예산	'14년 예산			
				예산	증감	%	
문체부	소 계		4,938	5,116	178	3.6	
	일반회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580	580	-	-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2,270	2,470	200	8.8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	100	100	-	-	
		한국어교원대상 재교육과정 운영	140	183	43	30.7	
		한국어교원대상 교육자료 개발보급	150	198	48	32.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780	780	-	-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 다양성 콘텐츠 제작	400	150	△250	△62.5	
		국립중앙박물관 다문화교육(문화로 다함께)	33	33	-	-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78	-	△78	순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40	25	△15	△37.5	
		국립현대미술관 문화다양성 미술관 교육	47	77	30	63.8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다문화 꾸러미 개발운영	260	260	-	-	
		방송발전 기금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120	320	200	166.7
		농식품부	소 계		1,626	1,766	140
농특회계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		1,326	1,526	200	15.1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교육		300	240	△60	△20.0	
안행부	소 계		1,400	1,088	△312	△22.3	
	일반회계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 교육	348	348	-	-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지원	1,000	700	△300	△30.0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책자발간 등	14	14	-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20	10	△10	△50.0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18	16	△2	△11.1	
고용부	고용기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525	525	-	-	
법무부	소 계		4,751	5,127	376	7.9	
	일반회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416	309	△107	△25.7	
		사회통합프로그램	4,335	4,818	483	11.1	
복지부	일반회계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	-	-	-	-	

○ 부처별 예산 특징

- 부처별 예산 규모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순

2) 각 부처별 주요사업 및 과제 현황

□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교육 기획 확대 (언어영재교실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으로 개편)
- 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 한국생활 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상담 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
 - 다누리콜센터(1577-5432),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 국제결혼피해 상담전화(02-333-1311)를 통합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1577-5432)”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특화과정 프로그램 운영 (총 700명 목표)
- 다문화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적응지원 확대 검토
 - 외국인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등과 연계·협업 시범추진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
 -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부담금 적용 시범추진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가족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가칭)’ 시범사업 실시

□ **교육부 주요사업**

- 예비학교 확대(80개교) 및 운영프로그램개발,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전담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학교 적응력 강화
- 직업교육과정 운영(200명),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강화 (6,000명 이상) 등을 통해 내실있는 맞춤형 지원 추진
-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 학교(예비학교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정(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 등으로 운영 확대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 2013년 52개교 → 2014년 100개교
- 일반학생·다문화학생간 상호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3~4학년군, 고등학교 1~3학년군 교과서 보급 등
- 교원, 교육전문직을 위한 다문화 교육 이해 관련 연수과정 개설
 - 「2014년 교원 연구 중점 추진 방향」에 직무연수과정 개설 권고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중점학교 120개교 운영)

□ **법무부 주요사업**

- 결혼이민 사증 심사 강화 등을 통한 국제결혼 건전화
 - 결혼이민 사증 심사 강화
 - ※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고시
 - ※ 결혼이민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강화
 - ※ 결혼이민 사증 심사 시 허위 교제경위서 작성 알선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강화

- 해피스타트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지원 강화
 -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시범위탁 운영
 - 국민 배우자(남편), 결혼이민자 가족교육 포함 및 부부교육 강화
 - 국가구성으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헌법적 가치 교육보급 확대

□ 외교부 주요사업

- 혼인·이혼 제도 차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적극 모색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 영사국장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결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
 - 필요시 상대국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가입 권유 등

□ 국방부 주요사업

- 지휘관 및 간부대상 교육 실시 및 장병대상 부대교육 실시 (반기 1회 이상)
- ‘다문화장병 차별행위 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관련 각 군 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속
- 자율시간 내 개인 기도시간 보장 등 다문화 관련 소수 종교자 (이슬람교, 힌두교 등) 활동여건 보장
- 부대개방 행사 및 각종 병영캠프에 다문화가정 초청

□ 안전행정부 주요사업

-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 추진
 - 한국어가 가능한 기정착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봉사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국 다문화지도자 양성사업(1,200명)” 실시

-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및 외국인주민 관련 협의회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8개월 (1차 3~6월, 2차 7~10월)
- 대상사업 : 다문화가정 및 여성활용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국내생활 조기 정착 지원
 - 다문화가정 여성활용사업 : 저소득층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 및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

○ 다문화수용성 제고

-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일반 공무원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 교과과정·과목 운영(11회, 6,000명)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사업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계층별·직군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2종 추가개발 및 교육연수분야 확대
 - ※ 문화기반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종사자, 기업HR담당자 등 6개분야
- 방송·미디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제작 대상 안내서 제작 및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도서·영상 등)의 지원 등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확대

○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및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 확대

-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민과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

-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한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체계화,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 이주민의 문화적응 지원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료 2단계 출판
-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원을 위한 재연수 실시를 통한 전문성 향상
- 다언어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및 다언어 프로그램 장르 확대
 - ※ 13개국 15개 방송사, 10개 언어로, 다큐 장르에서 뉴스 장르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사업

○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15회, 2,520명)

○ 다문화가족이 농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부처와 지역농협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2013년 32동 → 2014년 79동)
- 어린이집 교원(원장·보육교사), 농촌 지역농협 다문화가족 담당자 및 1:1 영농교육 멘토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농촌 지역의 문화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 실시(농협주관, 하반기)

□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 자치단체 주도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 부처가 재정·컨설팅 등을 지원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총 325명 목표)
- 결혼이민자 구직희망 명단 풀 활용, 고용센터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취업 알선 및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확대
 - 2013년 임금의 50%, 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2014년 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
 - 번역서비스 제공 확대(9개 국어 →11개 국어)
 - ※ 건강검진사업안내 다국어 리플렛 제작 배포(100,000부) 및 홈페이지 게시
-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의료 관련 인력을 진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의료기관 인력수요·취업 현황, 민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해당분야 현황 조사 실시(2014년 2월~7월)
 -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교재 제작 및 사이버 교육 강화(상시)
 - 수료생 Pool등록 DB구축·수요자 제공 및 체계적인 현장 실습 등 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서비스 실시(2014년 하반기~)
- 그 외 시설 종사자 이해 제고
 - 어린이집 교원(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각 직무교육 및 승급다문화 가정 영유아보육 및 지원 내용 교육 실시

- 다문화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 3~5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보급 계속(다문화 교육내용 포함)
- 다문화 교육내용 관련 교사용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로 교사수업계획 수준까지 포함) 전자책 개발 및 보급 (2014년 3월~5월)

□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사업

- EBS 다문화가족 관련 TV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지원
 -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사회 적응 과정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등 6개 프로그램, 214편
 - ※ 나눔 0700, 다문화 '사랑',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다문화 고부열전, 특집다문화 아빠교실, EBS다큐프라임(다문화)

□ 경찰청 주요사업

-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육 전문 강사 및 통역요원 활용,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 실시 확대
 -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사업을 '다문화가족 운전면허교실'로 명칭 변경, 수강대상을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으로 제한
- 경찰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시간 확보, 전문강사 및 강사료 지원 (자체경비 활용 및 여가부 협조)
- 경찰업무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여가부 협조) 경찰관 전문 강사 양성, 다문화 사회 관련 전문적 교육 확대

□ 농촌진흥청 주요사업

-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 운영 : 2회/월
 - 농촌생활애로 상담,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등
- 농촌 다문화공동체의 관계향상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진단표 및 지원 매뉴얼 개발 : 1종(9월)
- 농촌 청소년들의 다문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 : 1종(10월)
-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 지원 매뉴얼 개발 : 1종(11월)
 - 외국인 노동자 적응 및 관리 실태조사 : 전국 50개 지역, 750명 (3월)
- ‘다누리 포털’과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농촌진흥청)’ 연계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중앙부처별 과제현황 (2014년도)

<표 13> 2014년도 중앙부처별 과제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기관명	구 분	과제수	비율	소 요 예 산		
				2013년	2014년	증감률
교육부	계	11	100.0	15,540	21,500	38.4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7	63.7	15,540	20,200	30.0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36.3	-	1,300	순증
	6. 정책추진체계 정비					
법무부	계	7	100.0	693	586	△15.4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28.6	542	435	△19.7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	14.3	-	-	-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2	28.6	-	-	-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14.3	151	151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	14.3	-	-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여성가족부	계	46	100.0	69,852	72,702	4.1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4.3	53,883	56,224	4.3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7	15.2	8,618	8,888	3.1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15	32.6	5,251	5,690	8.4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6	13.0	1,400	1,400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6	13.0	700	500	△28.6
	6. 정책추진체계 정비	10	21.9	-	-	

기관명	구 분	과제수	비율	소 요 예 산		
				2013년	2014년	증감률
농촌 진흥청	계	1	100.0	250	180	△38.0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1	100.0	250	180	△38.0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					
경찰청	계	2	100.0	321	321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50.0	321	321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	50.0	-	-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방송 통신 위원회	계	1	100.0	2,387	2,387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	100.0	2,387	2,387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보건 복지부	계	4	100.0	368	378	2.7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	25.0	66	70	6.1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25.0	100	100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	50.0	202	208	3.0
	6. 정책추진체계 정비					
고용 노동부	계	4	100.0	525	525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	100.0	525	525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					
농림 축산 식품부	계	4	100.0	1,626	1,766	8.6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1	25.0	-	-	-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25.0	1,626	1,766	8.6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	25.0	-	-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1	25.0	-	-	-

기관명	구 분	과제수	비율	소 요 예 산		
				2013년	2014년	증감률
문화 체육 관광부	계	14	100.0	4,938	5,116	3.6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8	57.1	1,840	1,805	△1.9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	7.1	290	381	31.3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7.1	2,190	2,390	9.1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28.7	618	540	△12.6
	6. 정책추진체계 정비					
안전 행정부	계	5	100.0	348	348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	80.0	348	348	-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1	20.0	-	-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외교부	계	1	100.0	-	-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6. 정책추진체계 정비	1	100.0	-	-	-
국방부	계	4	100.0	44	44	-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100.0	44	44	-
	6. 정책추진체계 정비					

- 중앙부처별 과제는 여성가족부가 46개로 가장 많음
-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부도 각각 14개와 11개
- 같은 주제에 대한 부처별 과제신청과 시행이 중복성향이 특징

Ⅲ. 다문화가족지원책의 개선방안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1)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

□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

-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
 - 특히 중국(한국계)보다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자의 출산율이 증가(평균 2.3명)
- 국제결혼 감소, 이혼율의 증가
 - 2007년 이후 점차 외국인 결혼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그 이유로는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
 -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가장 큰 고충으로 지적
- 이혼, 사별 후 다문화한부모가정 증가
 - 가정폭력과 남편의 사별로 인한 경제적 곤란
 - 경제적 곤란은 자녀교육의 악영향으로 연결
- 사회적 편견 및 차별
 - 학교 및 직장 내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 새로운 사회 소외계층으로 등장할 가능성 농후

2) 다문화지원책의 문제점

□ 중복정책

- 초창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중복시행이 문제
- 동일 대상에의 부처별 중복지원으로 소규모 예산, 서비스 격차, 결과 등에서의 분절적 서비스 및 비효율성이 산출

○ 2014년도 과제현황도 중복과제 선정 문제 반복

- 과거정부에서도 지적된 문제

○ 다문화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의 부재

- 원만한 정책의 추진,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곤란

□ 한국형 다문화정책의 부재

○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징에 맞는 정책의 미비

-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

- 가정폭력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에 대한 정책부재

○ 타민족 및 인종에 대한 배타적 인식

-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차별과 소외가 문제

- 다원주의적 다문화정책개발과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

□ 교육문제 및 경제문제

○ 이혼 및 사별의 증가로 다문화한부모가정의 자녀교육문제 심각

○ 복지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한부모가정들은 새로운 빈곤 및 사회소외 계층으로 전락

○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언어교육 및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경제활동 영역 부족

- 숙련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영역이 부족

2. 다문화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제언

1) 정책의 대상의 전환 (이주자에서 정착자로)

□ 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자에서 정착(주)자로

- 2013년 이후 결혼이민자의 수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고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가 급증
- 결혼이주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정착(주)자(다문화가족포함)로 정책의 중심 전환 필요

□ 다문화가족의 자녀정책에 대해 정책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증가 비율로 미루어보아 이후 한국사회에 新계층 형성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다문화가정 내 불충분한 언어교육, 학교 내 왕따,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차단
 - 방치할 경우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악으로 발전할 가능성 농후
- 향후 늘어날 군복무관련 법령체제 및 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 교육필요
 - 군복무를 통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
 - 복무기간 차별방지, 제대 이후 취업 시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 검토

2) 다문화정책의 일원화

□ 용어 및 법체계의 혼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제시
 - 1990년대 후반 이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에 관한 혼재된 표현방식 등이 존재
 -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여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 확보

- 법체계 및 정책연계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다문화관련 몇 개의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다문화정책을 실시
 - 보다 넓은 틀에서의 다문화담론과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은 필수

□ **부처별 다문화정책관련 소통부재**

- 중복정책 및 중복과제에서 알 수 있듯, 중복정책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서 부터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중복정책의 문제는 해당부처 간 다문화정책관련 소통이 부재되어 있다는 점으로 해석
-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3) 이주자의 노동력 및 경제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 **정착(주)자의 숙련된 노동력 활용**

- 정착하여 안정된 결혼이민자들의 노동력 활용 제언
 - 한국어와 출신국가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인재
 - 영어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보육)현장과 출신국가와 교역을 하는 무역관련 현장에 적극 투여
- 노인복지 및 부족한 요양시설 전문(숙련)인력으로 활용방안 검토
 - 교육과 일정 자격증 취득 이후, 복지사와 요양사로 인력을 활용
 - 특히, 해당 지역사회의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해당지역의 복지와 요양을 담당하게 하는 정책 필요

□ 결혼이주자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결혼이주자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에스닉 음식, 공연 및 공예품 전시, 판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에스닉 마을 등의 건설
- 결혼이주자의 출신국가의 물품에 대한 면세지원마련
 - 종교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음식재료, 향신료 등 꼭 필요한 생필품에 대해서 면세제공

4) 이혼 및 사별을 통한 다문화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 검토

□ 다문화한부모가정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이혼과 사별을 통한 다문화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
 - 다문화한부모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
 - 기초생활비의 지급,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의 확대 필요
- 지역공동체에서 다문화한부모가정을 흡수하여 관리, 共生하는 차원의 정책 마련

[참 고 자 료]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 다문화 가족지원법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 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8442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74호, 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98호, 2012.2.10.> (난민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생략

2.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2079호 일부개정 2013. 08. 13.]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

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시행일 2013.9.23.]]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

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10.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 **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 **제12조의3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2012.2.1] [[시행일 2012.8.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 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 (과태료)**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

부칙 [2008.3.21 제8937호]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1.4.4 제105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제112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3.22 제1167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3.8.13 제12079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김영식 (2013).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 (2011). 『다민족·다문화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총괄보고서. 5,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행열 (2013).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8(3), 115-136.
- 김형수 (2008).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3(1), 127-151.
- 김형수 (2011).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26(2), 267-288.
- 김형수 (2010). “다문화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전략과 과제”. 『동북아연구』, 25(2), 87-103.
- 박기덕 (2012). 『한국 다문화사회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 신은주 (2010).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공동 학술대회자료집.
- 안은례 (2010)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51-77.
- 최웅선·이용모·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연구: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 논총』, 22(1), 33-70.

